의 안 번 호	제330호
의결연월일	2021. 5. 10.

- 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5. 3. 예산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21. 5. 3.

다. 상 정 일 자 : 2021. 5. 10.

제269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 (총무과장 : 최 명 락)

가. 제안이유

○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 권고(표준안, 2020.5.13.)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여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○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(안 제3조)

○ 후생복지제도의 기본원칙(안 제4조)

○ 후생복지 사업·시설 등 운영(안 제5조, 안 제6조)

○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(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까지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박 우 현)

❍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여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❍ 현재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규범적 근거를 강화하고,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의 기준과 원칙을 정하는 등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의 규정을 이행하는 사항이므로,

❍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
4. 질의·답변요지

❍ 없　　음

5. 토 론 요 지

❍ 없　　음

6. 심 사 결 과

❍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

❍ 없　　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❍ 없　　음